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지역경제과)

의안번호	159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2023. 08. 29.)
의 안 명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전문위원 정 진 만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2023.12.31)에 따라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시설명	소재지(행정동)	(현)위탁법인	시설규모	위탁기간
성북구 마을· 사회적경제센터 (개소일:2014. 11.)	성북구 종암로 25길 29(종암동)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 대지면적:943㎡ · 연면적:2,096㎡ · 규모: 지하1층 ~ 지상6층	[1기] 2015.04.01.-2017.12.31
				[2기] 2018.01.01.-2020.12.31
				[3기] 2021.01.01.-2023.12.31

나. 위탁기간 : 2024. 01. 01 ~ 2026. 12. 31 [3년]

구분	1~3기 민간위탁 (2015년~2023년)	4기 민간위탁 (2024년~2026년)
센 터 명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사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 마을만들기사업 민간위탁 계약 종료(2023.12.31)에 따른 위탁사무
조정 및 센터명 변경 필요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라. 위탁사무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지원(발굴, 컨설팅, 모니터링 등)
-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홍보, 시장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위탁 대상 관련 시설물 관리 등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
례 제22조(통합지원체계 구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정책실현을 위하여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²⁾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가. 주요내용

- 성북구 종암로 25길 29(종암동 80-8)에 위치한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제23조³⁾에서 규정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여

- 1) 마을만들기사업 민간위탁 계약 종료(2023. 12. 31.)에 따라 위탁사무의 조정 및 센터명 변경 예정.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 2)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제23조(관리·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문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3년간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민간위탁의 타당성

- 사회적 경제센터는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사회적 경제 영역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업 계획부터 센터의 관리운영,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발굴,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기업컨설팅 및 교육, 홍보 등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센터 운영 전반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관(官)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는 민·관 자원의 결합 및 민간주체역량을 극대화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됨.

④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4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 「지방자치법」 제117조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성북구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제22조, 제23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⁵⁾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법인·단체 등에 민간 위탁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조

4)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레’ 제5조제6호6)에 ‘사회적 기업, 마을 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센터는 민간위탁 사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라. 민간위탁 기간 및 선정 방식의 적정성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제24조제1항7),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8)에 따른 것이며,
- 수탁기관 선정 및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9)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과 제2항 ‘성북구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6.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제24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8) 제10조(계약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9)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마.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법’, ‘민간위탁 조례’ 및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